

공영주차장관리규정

제정 2003. 8.11 규정 제432-1호
개정 2012. 4.13 규정 제701호
2016. 7.12 규정 제820호
2017. 4.26 규정 제897호
2017.11. 1 규정 제917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시설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이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) 공영주차장의 관리는 관계법령 및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공영주차장”이란 「주차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조 및 제13조와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」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운영·관리하는 주차장을 말한다.
2. “직영주차장”이란 공영주차장 중 공단이 직접 운영·관리하는 주차장을 말한다.
3. “민간위탁주차장”이란 공영주차장 중 수탁업체를 통하여 운영·관리하는 주차장을 말한다.
4. “주관부서”란 공영주차장을 운영·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.

[본조신설 2017.11.1]

제4조(근무제도) 주관부서장은 직영주차장에 대하여 취업규칙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사업장별 특성을 감안하여 근무방법, 휴무제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7.11.1>

[중전 제3조를 제4조로 이동<2017.11.1>]

제5조(배상심의위원회) ① 공단은 직영주차장내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의 배상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배상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7.11.1>

② 위원회는 주관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임명하는 부서 소속 직원 등 총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 등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 <개정 2017.11.1>

③ 위원회의 안건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의결안에는 배상 여부, 대상 및 금액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.

④ 전항의 의결절차에서 위원의 의견이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은 직권으로 안건을 확정하거나, 위원회를 재소집할 수 있다.

⑤ 기타 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위원회관리규정에 의한다.

[전문개정 2016.7.12.]

[중전 제4조를 제5조로 이동<2017.11.1>]

제6조(운영시간) 주차장은 24시간 개방하되 유료운영시간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주차장별로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. (2012.4.13)

[중전 제5조를 제6조로 이동<2017.11.1>]

제7조(월정기권 발행 등) ① 관리소장은 월정기권을 당해 주차장 규모와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발행하여야 한다.

② 월정기권은 판매개시 전 발매 수량 및 방법 등을 이용자에게 미리 고시하며, 교통약자 및 환승목적 이용자 등에게는 우선 판매할 수 있다. (개정 2016.7.12.)

③ 조례상 월정기권의 할인 증빙서류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.(개정 2012.4.13, 2016.7.12.)

[중전 제6조를 제7조로 이동<2017.11.1>]

제8조(정기권 이용확인서 발행) ① 주관부서장은 개인택시·용달화물과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정기권 이용확인서를 발행할 수 있다. <개정 2017.11.1>

② 삭제 <2017.11.1>

[제목개정 2017.11.1]

[중전 제7조를 제8조로 이동<2017.11.1>]

제9조(시설관리) 관리소장은 주차장과 관련된 시설 및 장비의 이력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관리상태를 수시 점검한다.

[중전 제8조를 제9조로 이동<2017.11.1>]

제10조(민간위탁주차장 지도점검) 민간위탁주차장 시설물 관리 지도점검은 년 2회 이상 실시한다.

[중전 제9조를 제10조로 이동<2017.11.1>]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2.4.13)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6.7.12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7.4.26)(정관 제855호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이 정관의 개정으로 인하여 다른 규정이나 내규에서 개정되어야 하는 용어는 이 정관 개정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(2017.11.1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별표 1> (제6조제3항 관련)(개정 2012.4.13, 2016.7.12.)

월정기권 할인 증빙서류

감면자격	증빙서류	비고
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자동차등록증 ▶ 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상이자증 ▶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복지카드와 자동차 등록증상 명의자가 상이한 경우에 한함) 	
경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자동차등록증 	
저공해 자동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자동차등록증 ▶ 저공해자동차증명서 또는 저공해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 전면사진(확대 / 번호판 확인 가능본 각 1부) ※ 자동차등록증에 “저공해 스티커 발급 확인 도장”이 날인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만으로 증빙 가능 	
환승 (일반, 경차, 저공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자동차등록증(경차·저공해 및 환승 거주지 증빙) ▶ 재직(학)증명서, 학원 수강증 등 목적지 증빙서류 ▶ 주민등록등본(자동차등록증상 기준지와 현재 실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에 한함) 	1급지 제외
승용차요일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부착 차량 전면사진(번호판 확인 가능본) 및 스티커 확대사진 각 1부 	1급지 제외
5.18 민주화 부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자동차등록증 ▶ 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상이자증 ▶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복지카드와 자동차등록증상 명의자가 상이한 경우에 한함) 	
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자동차등록증 ▶ 다둥이 행복카드 ▶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다둥이 행복카드와 자동차등록증상 명의자가 상이한 경우에 한함) 	